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 배재대학교지부 운영규정

제정 2024.09.01.

전문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 배재대학교지부는 대학 노동자의 권익 옹호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교육 노동자의 양심으로 대학 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대학 상을 구현하기 위한 대학 노동자의 단결체이며,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 배재대학교지부는 민주적으로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학의 민주화를 이루는 한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고등교육 발전을 이루는 데 앞장선다.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본 규정은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이하‘조합’) 규정 제9조에 의거 지부운영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명칭) 본 조직은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 배재대학교지부(이하‘지부’)라 칭하며, 약칭 “배재노조”라 하고, 영문표기와 그 약호는 Pai Chai Univ. Workers’ Union, “P.C.W.U”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부의 주된 사무소는 배재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및 지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활동) 지부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 ① 대학 노동자의 통일·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 ②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조합의 결정에 의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2. 지부 문제에 해당하는 긴급한 단체협약 및 보충 협약에 관한 사항
 3. 지부 현장 문제와 관련된 노사 협의
 4. 지부 조합원의 고충 처리

5. 기타 지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제6조(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2장 조직

제7조(구성) 지부의 구성은 조합의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하고, 배재대학교에 근무하는 대학노동자로서 본 규정 제8조, 제9조에 의거 조합에 가입한 자(이하 '조합원')로 한다.

제8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조합이 정한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② 신입직원이 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신규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재가입 대상자로 한다.

③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 탈퇴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당연히 지부에 소속되며, 조합 탈퇴와 동시에 지부에서도 탈퇴된다.

제9조(탈퇴자의 재가입) 탈퇴자가 조합에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입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다.

- ① 각종 회의에 참가권, 발언권 및 규약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의결권
- ② 조합 및 지부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③ 조합 및 지부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 ④ 조합 및 지부 시설의 이용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 ⑤ 각종 회의 결정 사항 및 업무에 대해 공개, 열람, 설명을 요구할 권리
- ⑥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의 권리

제11조(의무) 지부 소속 조합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 ① 지부의 규정을 준수하고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
- ② 지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 ③ 지부활동 중에 취득한 비밀을 지킬 의무

- ④ 지부의 총회에서 결의된 조합비 및 특별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12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공무를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총회의 결의로써 신분 보장 및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① 사망하였을 경우
- ② 탈퇴서를 제출하여 확정되었을 경우
- ③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경우
- ④ 대학에서 퇴직 또는 해고 되었을 경우. 단, 해고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제기된 사건이 확정 판결될 때 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4조(기구) 지부에는 다음 각 항의 기구를 둔다.

- ① 총회
- ② 운영위원회
- ③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총회

제15조(구성 및 운영)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 기구로써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16조(소집) 총회는 지부장이 본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을 준수하여 장소, 일시,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 공고한다.

- ① 정기총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 3.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에 부의 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 ③ 전 2호 및 3호의 경우 지부장은 15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총회의 소집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정기총회 : 개최일 7일 이전
 - 2. 임시총회 : 개최일 1일 이전단, 비상 임시총회의 공고는 유선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

변이나 대학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다.

- ⑤ 성원 미달로 총회가 성원 되지 못하였을 때는 그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재소집 하여야 한다.

제17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부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지부장 선출 및 임원의 해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수립 승인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지부 운영 방침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지부의 해산 및 분할, 병합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 보충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8.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9. 지부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총회에 부의한 사항
 10.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중요한 사항
- ② 본 조 제①항 제2호, 제6호, 제8호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의하여야 한다. 단,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8조(구성 및 소집)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소집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월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1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① 총회에서 위임된 수입 사항
- ② 지부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 ③ 지부 운영 방침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④ 선거관리위원, 단체교섭위원 및 노사협의위원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 ⑤ 상벌에 관한 사항
- ⑥ 각종 규정의 제정(안)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 ⑦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 ⑧ 각종 위원회 위원 선발 및 파견에 관한 사항
- ⑨ 조합에서 위임한 사항

⑩ 기타 지부 운영에 관한 중요 의결사항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0조(구성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차기 지부장이 선출된 후 7일 이내로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지부장이 선임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1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선거관련 일체의 공고
- ② 입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 ③ 투표 및 개표의 관리
- ④ 당락 판정 및 당선 확인과 발표
- ⑤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선거관리규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회의

제23조(성립 및 의결) 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특별 의결)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 ②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 ③ 긴급동의(緊急動議) 성립에 관한 사항
- ④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 및 부서

제1절 임원

제25조(임원)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지부장 1명
- ② 수석부지부장 1명
- ③ 부지부장 2명
- ④ 사무국장 1명
- ⑤ 회계감사 2명

제26조(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장

- 1.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업무의 일체를 총괄한다.
-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4. 각 국의 국장 및 지부의 사무직원을 임명한다.
- 5. 지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 요청
- 6. 각종 규정의 임시해석권을 갖으며, 조합중앙운영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7.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거관리위원, 단체교섭위원, 노사협의위원을 위촉한다.
- 8. 지부장 유고시 직무대행 우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수석부지부장
 - 2) 부지부장(연장자순)
 - 3) 사무국장
 - 4)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② 수석부지부장

- 1.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을 대리한다.
- 2. 각 국의 국장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갖는다.
- 3. 지부의 대변인이 된다.

③ 부지부장

- 1.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지부장을 대리한다.
- 2. 각 국의 국장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갖는다.

④ 사무국장

-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2. 지부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의 관리 책임을 맡는다.
- 3. 각 국의 국장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갖는다.
- 4. 회계감사에 응하며, 그 책임을 맡는다.

5. 각종 회의의 회의 자료작성, 업무보고 등의 책임을 진다.

⑤ 회계감사

1. 회계감사 위원은 매회계년도 결산 시 지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제27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 ① 지부장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 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 수 득표로 선출한다.
- ②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 ③ 회계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거수투표 결과 다 득표자 2명을 지명 선출한다.
- ④ 기타 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보선) 지부의 선출직 임원 유고시 지체 없이 보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유고된 선출직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 대행만을 선임한다.

제30조(탄핵) 지부 임원의 탄핵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 ② 탄핵소추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운영위원 2/3 이상이 요구한 경우
 2. 조합원 1/3 이상이 요구한 경우
- ③ 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 ④ 지부는 탄핵소추 또는 탄핵의결 즉시 조합에 보고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절 부서

제31조(부서) 지부에 다음 각 항의 국을 두며, 각국에는 국장을 둔다.

- ① 조직국
- ② 기획국

- ③ 교육국
- ④ 후생복지국
- ⑤ 대학발전지원국
- ⑥ 편집국

제32조(임무)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조직국
 - 1. 조직 확대 및 강화에 대한 기획활동에 관한 사항
 - 2. 조직 행사 및 각종 회의 시 동원에 관한 사항
 - 3. 조직 상황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 4. 지부의 대내·외 연대 사업에 관한 사항
 - 5. 노동쟁의의 발생판단 및 쟁의행위 업무
 - 6. 기타 조직 강화에 관한 사항
- ② 기획국
 - 1. 지부의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2. 노동관련 조사통계 및 법제에 관한 사항
 - 3. 임금 및 노동조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4. 경영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5. 조합원 의식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6. 기타 기획에 관한 사항
- ③ 교육국
 - 1. 조합원 교육에 관한 사항
 - 2. 조합원의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 3. 지부의 홍보에 관한 사항
 - 4.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
- ④ 후생복지국
 - 1. 조합원의 후생복지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 2. 조합원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 3. 조합원의 업무, 문화 소모임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기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⑤ 대학발전지원국
 - 1. 대학 내·외 발전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 2. 기타 대학발전에 관한 사항
- ⑥ 편집국
 - 1. 지부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 2. 지부의 사료 정리, 보존에 관한 사항
 - 3. 기타 자료집 발간에 관한 사항

제6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33조(단체교섭) 조합의 위임에 의해 교섭을 진행한다.

제34조(체결) 조합으로부터 지부가 체결권을 수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조합의 승인으로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35조(단체교섭 안) 단체교섭 안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제36조(단체교섭 단 구성) 지부 단체교섭 단 구성은 지부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구성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37조(조정신청) 지부의 조정신청은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지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한다.

제38조(노동쟁의) 지부는 본 규정의 목적 및 활동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한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39조(쟁의행위) 지부의 쟁의행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의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동의를 얻은 후 조합의 승인을 거쳐,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0조(쟁의대책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은 조합 규약 제50조, 제51조를 준용한다.

제7장 재정회계

제41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결의에 의한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의 수입 등으로 한다.

제42조(조합비) 조합비는 매월 급여(기본급+상여수당+장기근속수당+정근수당)의 1%로 하며, 비율의 조정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43조(회계구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9월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결산) 회계연도 말 결산 및 운영사항을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46조(포상 및 징계) 조합원을 포상 또는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8장(포상 및 징계)에 의거 처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을 준용하거나 통상 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 ① 이 규정 제정(개정) 당시의 조합원은 이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 본다.
- ② 이 규정 제정(개정) 당시 선임된 임원 및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